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건 축 물 의 분 양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 확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약신청자도 증가하면서 청약업무 전산시스템이 불안정한 일부 분양현장에서 분양받을 자의 선정 및 청약신청금 환불 등이 지연되어 청약신청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따라 건축물 청약신청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하는 일부 개정령안을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7조의2)

1)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할 때 3백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만 인터넷 청약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안정적인 청약업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분양현장에 청약신청자가 폭증되는 경우 분양받을 자의 선정 및 청약신청금 환불 등에 차질이 생겨 청약신청자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음.

2) 이에 대해 청약신청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록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에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생활숙박 시설을 추가하되, 10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오피스텔로서 300실”을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로서 100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모집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u>오피스텔로서 3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u> ② ~ ④ (생략)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① ----- ----- ----- <u>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로서 100실</u>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1 - 3436